

닛산 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 적용)

- 임차인(이하“당사”라 함)은 본 약관(이하“약관”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렌터카”라 함)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임차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아닌 다른 이를 운전자로 지정할 경우, 해당 운전자가 운전자에 관한 약관 내용을 숙지하고 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요사항 설명서, 제42조에 규정된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 당사는 약관, 중요사항 설명서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고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2장 예 약

제2조(예약 신청)

-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미리 차종 등급, 사용 목적, 대여 시작 일자,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영유아용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대여조건(이하“대여조건”이라 함)을 명시한 후에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 신청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해당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 변경)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함) 체결 전에 전조 1일의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 취소 등)

- 임차인은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대여계약 체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아래에 제시된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즉시 지불하고, 당사는 본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사전에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예약 취소 수수료)

승차일 7일 이전	승차일 6~3일 전	승차일 2일 전 및 전날	승차일 이후
무료	기본요금의 20%	기본요금의 30%	기본요금의 50%

- 당사의 사전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전항의 예약 취소 수수료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과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할 경우, 예약 시와 다른 차종 등급의 렌터카(이하“대체 렌터카”라 함) 대여를 임차인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대여요금은 대체 렌터카 차종 등급의 대여요금과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요금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 임차인이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 불가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때는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고,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을 때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만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예약 업무 대행)

- 당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대행업체”라 함)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행업체를 통해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해당 대행업체에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변경 시에는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대 여

제8조(대여계약 체결)

-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을 통해 임대조건을 명시한 후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할인권, 대행업체가 발행한 쿠폰(이하“쿠폰”이라 함) 등을 사용할 경우, 대여계약 체결 시 이를 당사에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국토교통성의 통고에 따라 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운전자”라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당사에 제시하고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통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 및 반납 시에 전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현금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9조(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또는 당사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제시 또는 사본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2) 음주 상태인 것으로 인정될 때
(3) 마약, 히로뎀, 시니 등에 의한 중독증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될 때
(4) 영유아용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조직, 폭력조직 관련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인정될 때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제8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요구 등에 불응할 때
(3)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4) 과거 대여 시, 제17조 각호에 제시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 대여 시(다른 렌터카 사입자에 의한 대여 포함), 제18조 제7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대한 방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 미지불 보고 또는 미반납 피해 보고의 대상이었던 사실이 있을 때
(6) 과거 대여 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때
(7) 당사의 거래 시, 당사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를 했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월한 부당함을 요구했을 때
(8)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때
(9) 기타 당사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 전 2항의 경우, 임차인과사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사전에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대여계약 성립 등)

- 대여계약은 제8조 제7항의 대여요금 결제방법이 합의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시점에서 성립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수령한 예약 신청금 및 임차인이 당사에 제출한 쿠폰의 교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합니다.
-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해당 항에 명시된 대여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대여요금)

- 대여요금이란 아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비품 사용요금
(3) 리턴프리 서비스 요금
(4) 배차 회수 요금
(5) 기타 당사 소정의 요금
-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순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은 고베 운수감리부 고교육문장,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문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 동 동일함)에게 신고하여 적용 중인 요금에 따릅니다.
- 제2조에 따른 예약이 완료된 후, 당사가 대여요금을 개정한 경우에는 예약 시 요금과 대여 시 요금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제12조(대여조건 변경)

-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계약 시 정한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조건 변경으로 대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해당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일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가 완료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완료되었고, 당사 소정의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비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으며, 렌터카가 기타 대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는 전항의 확인 과정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 영유아용 카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영유아용 카시트 설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대여증 교부, 유대 등)

-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에 지방순수국 운수지국장(이하“소정”이라 함)이 지정한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수한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사용 중”이라 함) 전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당사에 즉각 알리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에 대여증을 함께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4장 사 용

제15조(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료를 다해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6조(일상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매일 사용 시작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일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 및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당사의 승낙 없이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렌터카를 정해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14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낙하지 않은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끌거나 밀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
- (6)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 (8) 렌터카를 일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 (9)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고 오손하는 행위
- (10) 기타 대여조건(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승낙하에 대여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대여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불법주차 시의 조치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주차를 한 경우, 불법주차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금 등을 스스로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건인, 보관, 회수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지 주차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렌터카를 신속히 이동시키고, 렌터카에 관한 여러가지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일시까지 불법주차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 당사의 판단하에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전항의 지시 후, 당사의 판단하에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정보공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반을 처리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위반자라고 인정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지 주차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료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자인서”라 함)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항의 지시를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지 주차위반 관련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공인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서 규정한 변명서,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 제출, 사실관계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지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지 위반금을 납부했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 수색 및 렌터카 이동, 보관, 회수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이하“수색 비용 등”이라 함)을 부담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방지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수색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제3항에서 규정된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수색 비용 등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임차인이 제3항에서 규정한 방지 주차 위약금 또는 전항에서 규정한 방지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임차인이 법적금을 납부하거나 공소 제기 등으로 인해 방지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지 위반금을 환급요청 시에 당사는 임차인이 지불한 주차위반 위약금 또는 환급받은 방지 위반금 상당액에서 미지불 수색 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여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또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당사가 제5항의 방지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거나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5항의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대한 방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 미지불 보고(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소정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한 보고 포함)를 통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당사에 제5항의 청구액 전액을 지불한 경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방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 미지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 보고한 방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 미지불 보고를 취소합니다.

제19조(GPS 기능)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범지구 위치측정 시스템(이하“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된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여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2)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른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0조(블랙박스)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된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사항이 기록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른 공개를 요구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5장 반 납

제21조(반납 책임)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및 비품을 대여기간(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승낙하에 대여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대여기간) 만료 시까지 정해진 반납장소(제12조 제1항에

- 따라 당사의 승낙하여 반납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납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해당 위반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임차인은 ‘대여기간 시작 시점에서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요금을 추가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과 사전에 지불한 대여요금과의 차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여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반납 지연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즉시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반납 시의 확인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휘발유 등의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 입회하여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전기자동차의 잔치 소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도 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 렌터카 안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반납해야 합니다.

제23조(대여기간 연장 시의 연장 요금)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승낙하여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후의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연장 전의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요금을 추가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과 사전에 지불한 대여요금과의 차액을 렌터카 반납 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반납장소 변경)

-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장소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해진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별도 규정된 반납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반납장소 변경 위약료=반납장소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회송 비용×200%

제25조(정산)

- 임차인은 렌터카 반납 시 연장요금, 리턴프리 서비스 요금, 반납장소 변경 위약료 등의 미정산금(이하 “미정산금”이라 함)이 있을 경우, 해당 미정산금을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 렌터카 반납 시 휘발유 등의 연료가 보충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사용 중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연료 정산금”이라 함)을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제26조(미반납 시의 조치)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반납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청구에 불응하는 등 렌터카 또는 비품의 미반납이 인정될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조치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대한 미반납 피해 보고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소정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한 보고 포함)를 통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탐문조사,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 작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여기간 만료 시점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소취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렌터카 수색 및 회수, 임차인 또는 운전자 수색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7조(고장 발견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8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사고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 것
 -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 외에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할 것
 -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해 협조합니다.
-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탐지형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충격 또는 급제동이 가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9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를 도난당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
 - (2)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즉각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도난,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30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 종료)

- 사용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기타 사유(이하“고장 등”이라 함)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포함)에는 대여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시에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렌터카 회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 않습니다. 단,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고장 등이 대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 불량, 기타 렌터카의 대여조건 부작함에 기인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은 제5조 제2항에 따릅니다.
 -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대여요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이는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작 시부터 대여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임차인은 본 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 사용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해 본 조의 규정 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등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1조(배상 및 영업 보상)

- 임차인은 대여한 렌터카 사용 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7조 규정에 따른 대여 대행 렌터카 포함)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전항의 당사해 입은 손해 중,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 오손 및 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중요사항 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한 렌터카(제37조 규정에 따른 대여 대행 렌터카 포함) 사용 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2조(보험 및 보상)

-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별도 중요사항 설명서에서 당사가 규정하는 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 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잔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우,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 한하며, 운전자의 경우, 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 한합니다. 본 조 제5항도 동일합니다.
- 전 3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대신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당사에 즉시 반제해야 합니다.
- 제1항의 면책액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여계약 시 임차인이 면책보상 제도에 가입하여 면책보상 수수료를 지불했고, 동시에 경찰 및 당사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대여 후에 제9조 제1항 제4 내지 제4호 또는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발생한 사고 및 대여기간(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승낙하여 대여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대여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가 그 면책액을 부담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 해지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악관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즉시 반납함과 동시에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전항의 경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작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금액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임차인은 전항의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4조(동의 해약)

-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사전에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작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단, 당초 계약한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의 차이가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경우,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5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및 이용 동의)

- 당사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당사를 포함한 ‘닛산 렌터카(주식회사 닷산 카렌탈 솔루션 및 당사와 닷산 렌터카의 점포 운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를 말하며, 이하 “닛산 렌터카”라 함)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
(1) 임차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 포함)	가. 대여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의무 이행 및 계약 관리(제18조 제4항에 따른 경찰 및 국민위원회에 대한 보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대한 보고 및 임차인의 본인, 친척, 임차인으로부터의 문의 대응 등 포함)
(2) 차종, 등급, 용도, 대여기간 등 대여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	나. 렌터카 회원(임의회 및 23보너스클럽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원 관리
(3) 임차인이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시한 운전면허증 등에 기재된 정보	다. 닷산 렌터카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이하 “닛산 렌터카 상품 등”이라 총칭함)에 관한 홍보용 인쇄물 발송, 친화, 친화 및 전용 등을 통한 안내
(4) 닷산 렌터카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라. 닷산 렌터카 상품 등에 관한 시장조사, 상품 등의 기획 및 개발
	마. 닷산 렌터카 상품 등의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설문조사
	바. 닷산 렌터카 제휴사 등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해당 기업 등의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홍보용 인쇄물 등의 발송
	사. 닷산 렌터카의 경영 분석을 위한 자료 작성 등
	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

- 임차인은 닷산 렌터카가 전항 (1) 및 (2)의 개인정보를 아래에 제시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처	제공처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닛산 자동차 주식회사	가.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닷산 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안내 나. 상품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의 검토. 또한, 해당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렌터카 이용 후기 또는 닷산 렌터카의 고객 응대 등에 관한 설문조사
주식회사 닷산 파이낸셜 서비스	가.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주식회사 닷산 파이낸셜 서비스의 영업에 관한 안내 나. 상품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의 검토. 또한, 해당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렌터카 이용 후기 또는 닷산 렌터카의 고객 응대 등에 관한 설문조사

- 임차인은 닷산 렌터카가 닷산 렌터카의 사무(컴퓨터 사무, 대금결제 사무, 고객관리, 고객 문의 대응 등의 사무) 업무를 주식회사 닷산 파이낸셜 서비스, 기타 제삼자에게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제1항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위탁처에 맡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당사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
(1)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 포함)	가. 대여 약관에 따른 권리 행사 나.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대한 보고 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
(2) 운전자기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시한 운전면허증 등에 기재된 정보	
(3) 당사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닛산 렌터카에 대하여 제1항 ‘나-마’에 규정된 이용 및 제2항의 제공 정지 및 자사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닷산 렌터카가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위 밝혀진 경우, 닷산 렌터카는 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단한, 주식회사 닷산 카렌탈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정정, 삭제 등에 관한 문의, 이용 및 제공 중지 문의, 기타 의견 제시 등의 경우에는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의 관련 서면 및 전화 등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음).
- 주식회사 닷산 카렌탈 솔루션
- 〒220-8686 横浜市西区高島 1-1-1(요코하마시 니시구 다카시마 1-1-1)
- 전화: 0120-964-923(평일 9시-18시)
- 홈페이지 주소: <https://nissan-rentacar.com/>

제36조(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임차인은 당사가 제18조 제7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보고한 임차인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해당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및 각 지자체 가맹 렌터카협회와 그 회원사에 의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0장 잡 칙

제37조(대여 대행)

당사가 렌터카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렌터카 대여를 대행하도록 하는 거래를 통해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8조(상계)

약관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당사에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비세)

임차인은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40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로 산정되는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1조(일문 약관의 우선 적용)

일문 약관과 영문 약관 사이에서 영어 또는 문장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일문 약관을 정식 문서로 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42조(중요사항 설명서, 선택 및 약관 게시 등)

- 당사는 중요사항 설명서, 약관의 선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은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 당사는 약관 및 전항의 특약을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43조(합의 관할 법원)

약관에 대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또는 영업부의 소재지, 대여장소의 소재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